

★ ◎

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

문서번호	토목과-4630
결재일자	2015.4.24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★주무관	토목팀장	토목과장	안전건설교통국장		
우한상	신근주	代신근주	04/24 안대회		
협	기획예산과장	이운영			
조	법률전문관	원종배			
	법제팀장	이상수			
	주무관	이지현			

부당이득금 민사소송 응소계획
[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08582]

2015. 4.



성 동 구

부당이득금 민사소송 응소계획

우리구 성수동1가 39-2(63㎡,도로)번지에 대해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사 선임 후 적극적인 대응으로 본 소송에 대처코자 함.

■ 민사소송 사건개요

- 사 건 명 :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
- 사건번호 :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 108582
- 사건당사자
 - 원 고 : 은정창
 - 피 고 : 서울특별시 성동구

■ 청구취지 및 원인

● 청구취지

- 피고는 원고에게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- 피고는 2015.3.27.부터 별지기재 토지에 대한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금100,000원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● 청구원인

- 원고는 서울 성수동1가39-2 도로 63㎡의 공유자로서 2009.7.14.(접수43700호)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보전등기를 마쳤습니다.
- 이사건 토지는 공로인 “성덕정길”, “성덕정9길”, “둘레7길”이 만나는 교차로에 포함된 토지로서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고 있습니다.
- 피고는 이사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, 이러한

이유로 원고는 피고가 도로포장한 이후로 토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어,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·수익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.

-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포장하여 점유 사용한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기 발생한 지료상당 부당이득과 점유를 종료할때까지의 지료를 청구함. (부당이득액과 지료는 추후 감정을 통하여 정확한 액수를 확정)

■ 응소 사유

- 성수동1가 39-2번지는 1913년 사정당시 은원필(원고의 부)소유의 토지로 1940년 지목변경(대지 → 도로) 되었으며, 2009년 7월14일 소유권 보존된 토지입니다.
- 당해 토지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의 현황대로 분할측량된 것으로 보이며, 주변토지의 이용현황 및 도시계획사업(도로)이 시행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때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도로로써 토지주가 공공인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.

■ 소송대리인(변호사) 선임

- 성 명 : 조기연
- 주 소 : 서초구 서초대로 309 5층 나호 법무법인 집현전

■ 소송담당자 지정

○ 본 사건에 대하여 아래 직원들을 소송담당자로 지정코자 합니다.

구 분	소 속	직 급	성 명	비 고
소송수행자	토 목 과	토목 6급	신근주	
		토목 7급	우한상	

붙임 : 1. 소장 1부.

2.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. 끝.